

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

(2025년 1월 기준)

(단위 : 원)

분 류 [인건비 지급비율]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재가급여 월 한도액		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방문요양 (방문당) [86.6%]	30분이상		16,940					이용 불가
	60분이상		24,580					
	90분이상		33,120					
	120분 이상		42,160					
	150분 이상		49,160					
	180분 이상		55,350					
	210분 이상		61,670					
	240분 이상		68,030					
종일 방문요양	12시간 이상~24시간 미만		수가 : 95,960 가산금 : 76,510		1,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연간 11일 이내			
방문목욕 (방문당) [49.6%]	방문목욕 차량(차량내 목욕)		86,480					이용 불가
	방문목욕 차량(가정내 목욕)		77,970					
	방문목욕 차량 미이용		48,690					
방문간호 (방문당) [60.1%]	15분 이상~30분 미만		41,710					이용 불가
	30분 이상~60분 미만		52,310					
	60분 이상		62,930					
주.야간 보호 (1일당) [48.5%]	3시간 이상~6시간 미만		40,650	37,630	34,740	33,160	31,580	31,580
	6시간 이상~8시간 미만		54,490	50,470	46,590	45,000	43,400	43,400
	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		67,770	62,780	57,960	56,380	54,780	54,780
	10시간 이상~13시간 이하		74,660	69,160	63,900	62,290	60,710	
	13시간 초과		80,060	74,170	68,520	66,930	65,350	
단기보호 (1일당) [58.8%]	12시간 이상 100% 12시간 미만 50%		71,970	66,640	61,560	59,940	58,300	이용 불가
복지용구 1년 한도액			1,600,000					
시설 급여	노인요양시설 [62.5%]	요양보호사 2.1명당 1명 이상	90,450	83,910	79,240	4,5등급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 산정		이용 불가
	공동생활가정 [65.1%]		72,480	67,250	62,000			
방문간호 지시서	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	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	22,680					
		의사가 가정을 방문	70,030					
	「지역보건법」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	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	6,090					
		의사가 가정을 방문	13,140					
의사 소견서	의료법상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		61,040				(치매진단) 29,220	
	지역보건법 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		58,970				(치매진단) 26,510	